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
www.kipo.go.kr
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

보도자료

문 의	특허청	산업재산보호협력국	과 장 서창대	042-481-5182
		산업재산보호지원과	사 무 관 박종필	042-481-3573
	대전지방검찰청	특허범죄조사부	부장검사 박하영	042-470-4302
			검 사 고아라	042-470-4308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전 매체 2019년 9월 26일(목) 오전 10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[9월 26일(목) 오전 9시 30분 대전지검서 특허청-대전지검 공동브리핑]

특허청·대전지검,
외국계 기업들의 무분별한 한류 편승에 제동 걸어
- 상법상 국내법인 해산, 상표권 취소, 해외 단속 등 -

□ **특허청**(청장 박원주)과 **대전지방검찰청**(검사장 장영수)은 이른바 **'한류 편승기업**(한류의 인기에 편승하여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표기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해외기업)의 대표적 사례인 A 주식회사(외국 A사의 한국 법인)와 B 주식회사(외국 B사의 한국 법인)**에 대한 법원의 해산명령 결정**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..

□ 이들 외국기업들은 한류가 강력한 인기를 얻고 있는 동남아국가를 중심으로 **한국 브랜드인 것처럼 현지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영업전략으로 판매망을 확대**해나가고 있어 **한국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우리 기업의 수출 감소 등이 우려**되는 상황이었다.

○ 이들은 홈페이지나 매장 간판에 태극기, 'KOREA'를 표시하고 있었으며, 판매제품에는 문법에 맞지 않는 한국어로 된 표지를 붙여놓았고, 국내에서는 전혀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한국 법인을 상표권 소유자로 소개하는 등 **현지 소비자가 이들 업체를 한국기업으로 오인**하게 만들고 있었다.

○ 더욱이 K-뷰티로 잘 알려진 **한국 화장품의 외관을 모방하거나 국내 유명 캐릭터를 그대로 베낀 다수의 제품을 정품 가격의 1/2 ~ 1/3 수준**(ex. 우리나라 정품 클렌징폼 8,000원 / 외국기업 짝퉁 클렌징폼 3,000원)**으로 판매**하여 국내 기업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.

□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**해외지식재산센터(IP-DESK)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현황조사**를 실시하였고, 그 중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대전지검에 전달하였다.

○ **대전지검은** 2018. 7. 특허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접수받아 국내 유명 화장품 기업들의 피해 상황 조사, **관련 국내 법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**, 법인 설립 등을 대행해 준 컨설팅 업체 관련자들을 조사하였다.

○ 그 결과, A, B 주식회사는 2014. 11. 3., 2015. 11. 3. 각각 국내에 법인 설립 이후 **정관에 정한 영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고, 국내법인은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**하며, **대표자의 법령위반 정도가 중대**하여 국내 법인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상태임이 확인되었다.

○ 이에 따라 대전지검은 2019. 4. 3. A 주식회사 소재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B 주식회사 소재지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각각 A, B 주식회사에 대한 **해산명령을 청구**하였다.

○ 청구 이후 소송유지에 만전을 기한 결과, 2019. 8. 해당 법원으로부터 **A 주식회사, B 주식회사를 각각 해산한다는 법인 해산결정**을 이끌어냈다.

□ 이는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부정경쟁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상법상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함으로써 **외국계 유통기업들이 더 이상 한국 브랜드 및 이미지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사례**로서, **외국계 기업의 부정경쟁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조치**를 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.

□ **특허청은** 대전지검과의 공동 대응이외에도, 이들 업체에 대한 국내외 **현황조사와 법률검토를 토대로** 올해 2월 산업부, 외교부, 문체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**범부처 TF를 가동**하였으며, 올해 5월에는 **'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방안'('19. 5, 경제활력대책회의)을 마련**한 바 있다.

□ 특허청은 그간 외교부, 산업부, 문체부 등과 협력하여 해외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**국내 화장품 업계를 중심으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**하고 있으며, 해외 현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류편승기업의 **'짝퉁 한류제품'을 적극적으로 단속**하고 있다.

○ 작년부터 피해가 심각한 화장품 업계를 중심으로 해당 기업들이 **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지원**하였으며, 국내 화장품 6개 기업이 공동으로 침해금지 경고장을 보내 **중국, 베트남, 태국에서 판매되던 23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를 유도**해냈다.

○ 한류편승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여 **베트남에서는 57개 매장에서 약 13만개의 제품을 압수 또는 폐기**토록 하였고 **외국 A사에만 1억동의 벌금을 부과**했다. **태국에서는 138개 품목 1,300여점이 압수**된 바 있다. 현지기관의 단속 이후 외국 A사의 매장 간판 및 포장봉투에서 **'KOREA' 문구가 빠지는 등 노골적인 한류편승 형태에 변**

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올해 **7월 중국 광저우에서는 외국 A사 등 3개 업체에 대한 단속**이 이루어져 **국내 3개사의 5개 브랜드 23개 품목에 대해서 자진철수**하고 추가 생산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.

○ 특허청은 해외 현지에서의 추가적인 단속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도 **양자회담, 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지 지식재산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**하고 있다.

□ 한편 A 주식회사가 국내에 보유한 **일부 상표*에 대해 취소심판이 제기되어 특허심판원의 취소결정**이 있었으며, B 주식회사 등 일부 한류편승기업이 **국내에 등록한 도메인도 말소**된 바 있다.

*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상표 2건에 대해 불사용취소심판이 제기되었으며, 2건 모두 특허심판원이 인용 결정함

□ 향후 대전지검과 특허청은 **A, B 주식회사의 해산명령 결과를 외교부 및 공관을 통해 해외 정부기관과 공유하고 추가적인 단속을 유도**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현지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, 우리기업이 **해외에서 직면하는 특허분쟁, 위조상품 유통 등 다양한 유형의 지재권 침해를 적극 지원**할 예정이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보도자료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박종필 사무관(☎ 042-481-3573)이나 이지호주무관(☎ 042-481-508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해외 한류편승기업의 국내 법인에 조치 경과**

1. 추진 배경

○ 중국, 베트남, 태국 등 지역에서 한국 유명제품의 외관을 모방하고 한국 산인 것처럼 표기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외국기업으로 인해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피해 발생

○ 특히, 해당 외국기업의 '국내법인 존재'로 인하여 외국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인 것으로 혼동하면서 한국 유명화장품 기업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등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대

○ 특허청은 국내 화장품 6개 기업들의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여 공동으로 침해금지 경고장을 보내고,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해외 정부에 단속을 요청하는 등 국내 피해기업들의 현지 개별대응을 조력하였으나,

- 외국 정부는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가 불투명하고, 검토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현지 단속에 미온적이어서 한계

○ **특허청**은 해외지식재산센터(IP-DESK) 및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류편승기업의 침해현황을 조사한 후,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정보를 대전지검에 제공

- 해당 외국기업은 모방제품을 우리나라 정품 가격의 1/2~1/3 수준(ex. 우리나라 정품 클렌징폼 8,000원 / 외국기업 짝퉁 클렌징폼 3,000원)으로 중국·동남아 등에서 판매 중

○ **검찰**은 특허청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였으나, 해당 피의자들이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만으로는 침해를 중단시키거나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한류편승 외국기업의 **국내 법인에 대한 직접적 제재방안을 마련**

※ 붙임1 '공동대응 진행 경과' 참조

※ 붙임2 '특허청, 한류편승기업 확산에 따른 범정부 대응 경과' 참조

2. 해산명령청구 사건 진행경과 및 결과

1. 피청구인

○ A 주식회사(외국 A사의 한국 법인), 2014. 11. 3. 설립

○ B 주식회사(외국 B사의 한국 법인), 2015. 11. 3. 설립

※ 붙임3 '외국 A사, B사 현황' 참조

2. 청구 이유 요지

○ **피청구인 A 주식회사**

- 2014. 11. 3. 법인 설립 이후 2018. 6.까지 사무실 없이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주소만 빌려주는 업체에 월 11만 원의 이용료만 납부해 옴

- 2018. 7.경 국내·외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여 사무실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위장하였으나 직원 및 집기가 없는 상태로 현재까지 정관에 정한 '잡화 도·소매 등'의 영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음

- 아울러, A 주식회사는 외국 A사의 부정경쟁행위를 위해 국내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, 부정경쟁행위 등 법령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법인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상태임

○ **피청구인 B 주식회사**

- 2015. 11. 3. 법인 설립 이후 2018. 10.까지 사무실 없이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주소만 빌려주는 업체에 월 11만 원의 이용료만 납부해 오다가, 2018. 10. 이후 이용료 미납으로 계약 자동 해지된 상태

- 현재까지 정관에 정한 '화장품 도·소매업 등'의 영업을 개시한 사실 없음

- 아울러, B 주식회사도 외국 B사의 부정경쟁행위를 위해 국내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, 부정경쟁행위 등 법령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법인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상태임

3. 상법상 법인 해산명령 사유 해당 여부

○ 상법 제176조 제1항 해산명령 사유 및 청구의 주체

▸ 해산명령 사유

-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
-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
-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

▸ 청구의 주체: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

※ 붙임4 '상법상 법인 해산명령 제도 개관' 참조

○ 법인 해산명령 사유 해당 여부

1	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지 여부

- 외국 A사, B사는 국내 유명 기업의 화장품 용기·포장을 모방하여 혼동을 초래하고, 마치 한국에서 화장품이 생산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**페이퍼 컴퍼니**인 A, B 주식회사를 설립

2	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

- A, B 주식회사는 각 국내 설립 이후 정관에 정한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고, 사무실 및 국내 직원도 전혀 없는 등 **페이퍼 컴퍼니**에 불과함
- 유일한 자산인 자본금 1억 원을 각 법인 설립 후 컨설팅 비용,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외국으로 빼내감
- 특히, A 주식회사는 2018. 7.경 국내에서 '한류에 편승한 짝퉁 기업'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자, 사무실을 임차하기는 하였으나 빈 사무실에 책상·의자 5개만 놓여 있을 뿐 집기는 전혀 없었음

※ 붙임5 'A, B 주식회사 사무실 현장사진' 참조

3	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

- A, B 주식회사는 **▲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** 가.목(상품주체 혼동행위), ▲동법 제2조 제1호 마.목(출처지 오인야기행위), ▲동법 제2조 제1호 카.목(타인성과 도용행위), **▲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**(저작재산권 침해) 등 법령에 위반

< 침해사례 예시 >

제품 '외관' 모방	홈페이지 '태극가무궁화' 표시	매장 간판 'KOREA' 표시	'캐릭터' 모방 악세서리

※ 붙임6 '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및 저작권법 관련 규정 및 자료' 참조

4. 법원의 법인해산 결정

○ 결정('사건본인 회사를 해산한다.')

- 2019. 8. 6. 서울중앙지법, A 주식회사 해산결정

- 2019. 8. 27. 서울남부지법, B 주식회사 해산결정

○ 결정 요지

- A, B 주식회사는 각 설립 이후,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등의 외국에서 화장품 등을 제조·판매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행위, 출처지 오인야기행위, 저작권법위반행위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데 이용되고 있고,

-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사유 없이 수입 및 지출 등의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으며,

- 법인의 각 대표자는 위 불법행위를 주도한 자로서, 법령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,

- **① 설립목적의 불법성, ② 1년 이내 영업 未개시 또는 영업 休止, ③ 이사에 의한 법령위반행위의 해산사유가 모두 인정된다.**

※ 법원은 검찰 및 특허청의 주장사실을 전부 인용

3. 사건의 의미

1. 검찰과 유관 정부기관간 적극적 공조로 외국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실효적으로 대응

○ 그 동안 우리나라 피해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경고장 등으로 개별 대응하였으나, 외국계 기업이 침해를 중지하지 않거나 새로운 모방품을 만들어 침해를 계속하여 개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음

○ 그러나 대전지검·특허청의 공조로 **본건 해산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**, 현재 중국·베트남·태국·필리핀 등 해외에서 계속 판매 중인 모방품 포장에 **국내법인을 상표권자(Brand Owner)로 표기한 부분은 '제품 허위표기'에 해당**

- 이에 따라 현지 당국에 해당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 및 불응시 '제품회수' 등의 행정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되므로 국내법인 해산은 외국기업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조치

2. 검사의 공익 대표자로서의 사명 성실히 수행

○ 해외 시장에서의 높은 신뢰도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아가는 국내 유명 화장품 제조업체를 보호하고,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부당경쟁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고자 하는 **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역할**을 수행

3. 기타 효과

○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제품의 고객흡인력을 외국기업이 부당하게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내 유명 화장품 업계 및 관련 산업 보호

○ 건전한 한류가 해외에서 만들어 내고 있는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해외에서의 한류 확산에 이바지

○ 해외 현지 소비자들이 가짜 한류상품으로 인해 상품 출처 등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한국제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

4. 향후 계획

1. 특허청

○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단속 중이거나 단속 예정인 외국 정부기관 등과 A, B 주식회사의 법인 해산결정 결과를 공유하는 등 현지 대응을 강화

○ 그 밖의 ASEAN, 중동지역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IP-DESK 및 KOTRA 현지 무역관, 해외저작권센터와 연계하여 현지 실태조사 및 법률검토 등 지속적으로 추진

○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허청과 검찰청, 외교부, 문체부, 산업부 등 '범정부 대응 TF'를 상시 가동하여 해외에서의 한국 브랜드 침해 행위에 대한 정부 대응을 더욱 강화할 예정

2. 대전지방검찰청

○ 향후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, 해당 형사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할 예정